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 정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